

등록번호	재정담당관-5230
등록일자	2019. 06. 13
결재일자	2019. 06. 13
공개구분	비공개(5)

사무관대우	시설사무관	재정담당관	정책기획관
류재원	박재규	이정희	전결 2019. 6. 13. 문성요
협조자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김태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명준		

“투자심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추진	주요 검토사항	
	정 책 중 요 도	보통
	민원 · 갈등 가능성	-
	기관간 이견가능성	보통
	홍보대책 필요성 (홈페이지 등록 필요성)	보통
	서민생활 관련성	-

정책효과 평가 강화, 사전타당성 용역자료 제출 의무화 등 「투자심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기 획 조 정 실
(재 정 담 당 관)

I. 추진배경

-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기재부 훈령 제435호)」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재부 훈령 제436호)」의 개정사항('19.5.1)에 맞추어 정책성 부문에 평가를 강화하고 「투자심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II.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정책성 부문에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특수평가 포함(제6조 제3항)
 - 사전타당성 용역의 정책성 부문에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특수평가 등을 포함하여 분석
- ② 사전타당성 용역자료 제출 의무화(제6조 제5항)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40일 전까지 사전타당성 용역자료 제출 의무화
- ③ 위원회 위원에게 자료 제공 의무화(제6조 제7항)
 -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사업 참고자료 제공 등 심의 내실화

III. 향후 추진일정

□ 총리실 규제심사: '18.6월

□ 시행 : '18. 6월

붙임 : 투자심사 관리규정개정안 1부.